
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

1. 토마토, 시금치, 배추속,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

- ① **관련규정:** 재배지검역 대상식물 및 세부요건 (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2)
- ② **관련병해충:** *Heterodera schachtii* (Beet cyst eelworm, 사탕무씨스트선충)
- ③ **대상:**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
 - 토마토(*Lycopersicon esculentum* (= *Solanum lycopersicum*) 포함), *S. arcanum*, *S. cheesmaniae*, *S. chilense*, *S. galapagense*, *S. peruvianum*, *S. pimpinellifolium*), 시금치(*Spinacia oleracea*), 배추속 (Brassica), 근대속(Beta)
- ④ **수출요건**
 - 수출식물은 아래의 **특별요건 (1)과 (2)**을 충족하여야 하고, 식물 검역증명서에 **부기사항**을 부기하여야 한다.
 - (1) **(무감염지역재배)** *H. schachtii*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,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(재배시설 포함)에서 재배되어야 함
 - (2) **(재배지검역)**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,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*H. schachtii*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
- ⑤ **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**
 -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-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(MAF Ordinance No73/1950)
[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-2의 4항목 준수(MAF Ordinance No73/1950)]

2. 재식용 키위 묘목(종자 및 과실 제외) 및 화분

① 관련규정: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
(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)

② 관련병해충: *Pseudomonas syringae* pv. *actinidiae* biovar3

③ 대상: 키위(*Actinidia deliciosa*, *A. chinensis* 포함), *A. argute*,
A. rufa, *A. kolomikta*의 재식용묘목(종자 및 과실 제외) 및 화분

④ 수출요건

○ 화분인 경우

-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, 식물검역증명서에
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.

(1) (무감염지역재배)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*P. syringae*
pv. *actinidiae*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,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
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

(2) (실험실검역) PCR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,
P. syringae pv. *actinidiae* biovar3가 무감염이 증명 되어야 함

○ 재식용식물인 경우(화분·종자·과실 제외)

-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, 식물검역증명서에
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.

· (무감염지역재배)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*P. syringae* pv.
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,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
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

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

○ Fulfills item 21 of the Annexed Table 2-2 of the Ordinance for
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(MAF Ordinance No73/1950)

[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-2의 21항목 준수(MAF Ordinance No73/1950)]

3. 재식용 박과류 식물 (과일 제외) 및 종자류

① 관련규정: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
(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)

② 관련병해충: *Acidovorax avenae* subsp. *citrulli* (Bacterial fruit blotch, 과실썩음병)

③ 대상: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(과일 제외) 및 종자류

- 오이(*Cucumis sativus*), 수박(*Citrullus lanatus* (syn. *Citrullus vulgaris*), *Cucurbita maxima*, 동아(*Benincasa hispida*), *Cucurbita moschata*, summer squash(*Cucurbita pepo*), 메론 및 참외(*Cucumis melo*), 박(*Lagenaria siceraria* (syn. *Lagenaria leucantha*))

④ 수출요건

○ 재식용 식물(종자 및 과실 제외)

-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(1), (2), (3)을 충족하고, 식물검역증명서에 **부기사항**을 부기하여야 한다.

(1) (무감염종자사용) 아래의 특별요건 (a) 또는 (b)에 따라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
(a) (수확전 검사)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(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) 되어야 한다.
또는

(b) (실험실검사)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(PCR assay 등) 또는 생물검정(grow-out method)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.

※ 종자업체에서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(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)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(사무소)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

(2) (무감염지역재배) 수출용 식물들은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(재배시설 포함)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

(3) (수출 전 검사)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의 검출이 없어야 함

○ 종자류

-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(1) 또는 (2)을 충족하고, 식물검역증명서에 **부기사항**을 부기하여야 한다.

(1) 재배지검역

- (무감염 모본사용)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
- (수확전 검사)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(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) 되어야 한다.

또는

(2) 실험실 검사

- (실험실검사)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,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(PCR assay 등) 또는 생물검정(grow-out method)을 실시하여 *A. avenae* subsp. *citrulli*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

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

-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-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(MAF Ordinance No73/1950)

[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-2의 19항목 준수(MAF Ordinance No73/1950)]